

단체교섭 운영에 관한 기본 합의서

제1조 [목적]

이 합의서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중울산농업협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[성실의무]

노사쌍방을 대표하는 교섭위원은 신의성실과 상호존중의 원칙하에 회의에 임하여야 한다.

제3조 [교섭위원의 구성]

- ① 단체교섭 위원은 노사쌍방을 대표하는 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1명의 간사를 둔다.
- ② 농협 측 위원 및 간사는 조합장과 조합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- ③ 노동조합 측 위원 및 간사는 대표교섭위원과 대표교섭위원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제4조 [본교섭]

- ① 노사쌍방의 대표교섭위원은 교섭위원 및 간사를 교체할 수 있으며, 교체할 경우 그 명단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본교섭은 2주 (1)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 쌍방이 합의할 경우 연기 또는 실무교섭으로 대체할 수 있다.
- ③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교섭을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소 3일전에 상대방에게 요청하여 합의를 얻어야 한다.
- ④ 회의의 진행은 노동조합측 간사가 맡되, 사측의 요구가 있을시 순번제로 진행을 맡는다.
- ⑤ 모든 교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 [실무교섭]

- ① 단체교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교섭 전에 실무교섭을 운영한다.
- ② 실무교섭은 주 (1)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 쌍방이 합의할 경우 연기할 수 있다.
- ③ 실무교섭은 노사 각 ()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위원이 교섭위원 중에 지명한다.

- ④ 실무교섭은 본회의에서 협의될 내용을 사전에 협의한다.
- ⑤ 실무교섭의 합의사항은 본교섭에서 합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내용은 노사쌍방 실무교섭위원이 서명하여 문서로 본교섭에 제출한다.
- ⑥ 본교섭은 실무교섭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항에 관하여 논의한다.

제6조 [회의록의 작성]

- ① 노사 쌍방의 간사는 다음사항이 포함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 - 1) 일시 및 장소
 - 2) 출석 인원
 - 3) 합의사항
- ② 전항의 회의록에는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한다.

제7조 [합의사항의 효력발생]

합의사항의 효력은 본교섭 합의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.

위와 같이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함.

2025년 5월 12일

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

협동조합업종본부 부울경본부장

이 정 호 (인)

중울산농업협동조합

조합장 장 승 환 (인)